

2. 기획위원회규정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기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(2011.7.1. 자구수정)(2021.6.22. 개정)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기획·홍보·중장기발전계획 및 대학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2011.7.1. 자구수정)(2021.6.22. 개정)

제3조(적용방법) 위원회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꽃동네현도학원 정관과 본교의 학칙 및 위원회 설치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기획관리처장, 교목처장, 교무입학처장, 학생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(2016.4.25.위원추가)(2019.2.8.개정)

②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기획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 (2016.2.03. 자구수정)

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임기)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시책 및 중·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구조직의 설패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학사제도 및 제반 행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
4. 시설 설비의 확충 계획에 관한 사항
5. 학칙 및 제 규정류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
6. 대학평가준비에 관한 사항
7. 교육의 질 관리 및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(2016.2.03 신설)
8. 홍보에 관한 사항
9.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

제8조(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체위원회를 대신하여 제9조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. (2016.2.03.신설)

1. 대학발전기획위원회
2. 교육의질관리위원회
3.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위원회

제9조(분과위원회의 의무) ① 대학발전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 (2016.2.03.신설)

1. 대학중장기발전계획 수립, 수정 및 보완
 2. 중장기발전계획 수행 성과관리 및 개선
 3. 기타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
- ② 교육의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1. 교육의 질 관리 표준 정립과 요구분석
 2. 대학 인재상과 핵심역량 개발과 관리
 3.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설계- 성과- 확인- 환류시스템관리
 4. 기타 교육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

③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
1.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
2.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
3.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환류 및 대응 방안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수요자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

제10조(회의) ①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11조(결과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회의록)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간사) ①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4조(전문위원 및 전문위원회)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15조(비밀의 유지)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규정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